

사회복지 주간 동향(23.10.16.~10.20.)

1. 중앙정부 정책 동향

1 중앙정부 복지현안

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

< 금융기관에서 9월 29일부터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가능 >



- *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(금)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(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)을 제공한다고 밝힘
 -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,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(금)부터 개설 가능하고,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
 -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,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 가능
 -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·군·구에 제출하면,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
 -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·군·구에 신청

※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

2 중앙정부 복지현안

범정부 공동활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, 사회보장통계 칸막이 해소

< 사회보장제도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통계 개선대책 수립 >

- *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정책에서의 사회보장통계의 분석·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시행할 「사회보장통계 개선대책」을 마련함
 - 그동안 각 부처의 사회보장통계는 개별 부처, 사업 단위로 분산 관리되어 사회보장 수급자의 신청·탈락·수급 등의 정보가 제도별 분절되어왔기에 정책 여건과 그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
 -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‘객관적 근거에 기반된 사회보장정책의 설계·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 및 활용강화’를 진행. 이를 위해, 보건복지부는 「사회보장기본법」을 개정(’21.12월 시행)하고 부처별·제도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연계하여 국민 빅데이터로서의 ‘사회보장 종합데이터’를 구축
 - 다양하고 입체적인 분석 지원을 위하여 전 국민의 20%에 해당하는 표본(약 1,000만 명)을 추출하고 33개 기관의 행정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개인 단위로 결합한 종합 데이터
- * 이번 개선대책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사회보장 통계·지표생산 및 기존의 사회보장통계의 정책활용도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
 - 주요 과제로는 ▲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의 산출방식 개선 ▲국책연구기관 연합(사회정책협력망)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품질검증을 통한 정책분석·활용 제고 ▲국가, 지역 및 공동체 중심의 ‘사회의 질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 구성 및 신규 통계지표 개발 ▲사회보장위원회, 교육부, 통계청 등의 협력을 통해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등

붙임1

사회보장통계 개선대책(개요)

1. 배경

- 사회보장제도 관리와 그 기반이 되는 사회보장통계체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 사회보장통계 강화방안 마련
 - 사회보장통계가 개별부처·사업단위로 분산 관리되어, 정책 여건·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·판단하기 위한 활용은 한계

2. 주요 내용(요약)

- * 추진방향
 -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품질향상과 활용강화를 통해, 사회보장통계·지표 생산 및 기존 사회보장통계의 정책활용도 단계적 개선
- * 주요 과제
 - ① (지출 개선)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방식 개선·관리를 통한 재정통계 정확화
 - 민간 사회복지지출 자료보완(개인연금 등) 및 지출의 시계열 자료 구축·활용 등

- ② (품질관리) 국책연구기관 연합(사회정책협력망)의 데이터 분석·활용 품질검증
 - 20여개 국책연구기관의 다양한 관점의 피드백을 통해, 데이터 활용도 검증
- ③ (사회단위 지표체계 개발) 국가, 지역 및 공동체 중심의 ‘사회의 질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 구성 및 세부 통계지표 개발
 - 소득·자산, 고용, 교육, 네트워크, 참여 등 ‘사회의 질’ 접근에 따른 체계적·종합적 사회통합지표 구축
- ④ (기반구축) 사회보장위원회, 교육부, 통계청 등과 협력체계로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범정부 데이터 공동·활용 플랫폼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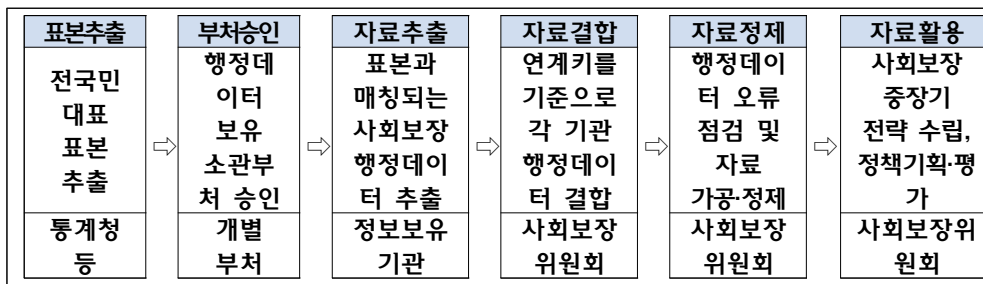
3. 향후 계획

-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품질관리방안 및 협력체계 마련('23.9~12.)
- 세부과제 확정 및 시범분석('24~'25), 사회보장통계지표 순차적 공표('26~'2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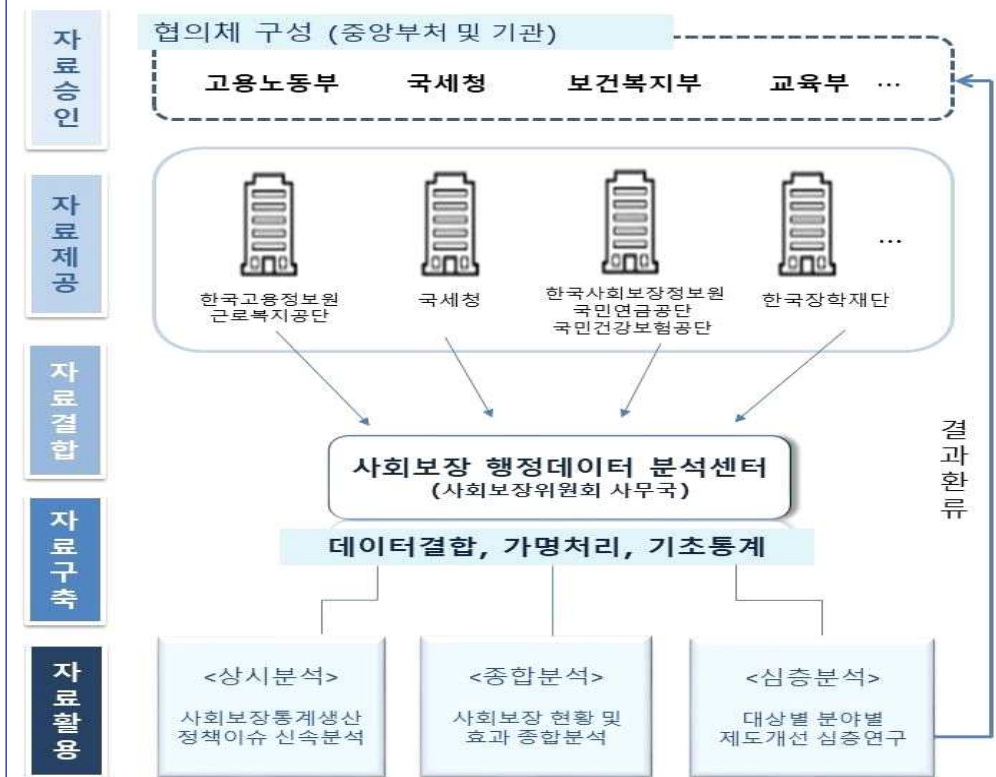
붙임2

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·활용 과정

-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·활용 과정



-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추진체계



※ 보도자료 참조(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평가과)

3 중앙정부 복지현안

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·의결

< 약자복지,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체계 구축 >

- *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(수) 제30차 본회의를 통해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협의 시 검토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함
 -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-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복·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하기 위해 운영
 -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은 약자복지, 서비스 복지 중심으로 우리나라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,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되, 경쟁적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정책 대상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또는 용처를 정한 바우처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함
- *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기본방향에 따라, 향후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협의 시 사회적 약자 대상 여부, 공적지원 필요성, 지원수준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,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현금복지 사업은 대상자별로 실제 필요한 사회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방침

붙임1

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 방향

- * (제도취지)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복·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(중앙-지방 제도 정합성 유지)을 위해 운영
- * (약자복지)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보충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의
 - 사회적 약자(저소득층, 다자녀, 한부모, 청소년부모 등 사업별로 다양)
 - 지자체의 보충적 지원 필요성은 공적지원이 필수적인지(사업의 타당성)에 따라 판단
 - 지원수준의 적절성은 유사한 중앙사업 유무 및 그 사업의 지원수준 등을 고려하여 광역 + 기초 지자체 지원금액의 총합으로 판단
- * (사회서비스 중심) 경쟁적 현금복지 지양, 정책대상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또는 용처를 정한 바우처로 설계하도록 협의
 -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현금복지 사업은 대상자별로 실제 필요한 사회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컨설팅, 복지-고용-성장 선순환 구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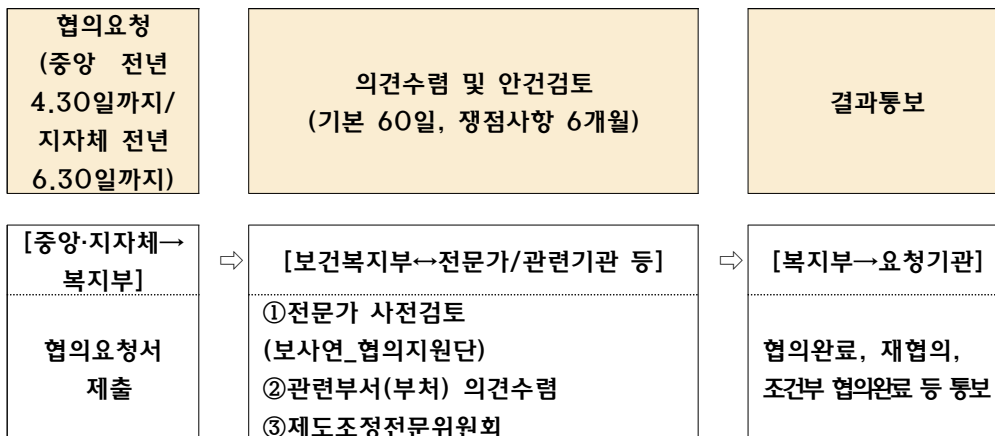
붙임2

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사전협의제도 소개

*** 사전협의제도 개요**

- (목적)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 및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
- (근거) 사회보장기본법(제26조)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시,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('13년 이후)

- ◆ (사전협의 대상) '사회보장' 및 '평생사회안전망'에 해당하는 제도 신설·변경
- (사회보장)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·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,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(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)
 - (평생사회안전망)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·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(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5호)
 - (협의기준) 신설·변경 사업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, 전달체계·재정·지역복지 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 - 특히, 지자체는 자치분권 취지와 국가 사회보장체계 정합성을 고려
 - (업무절차) 중앙·지자체 협의 요청 시, 전문가·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종합 검토를 거쳐 결과 통보



- 협의 미성립 시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조정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
 ※ 보도자료 참조(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)

2. 통계로 보는 복지

1 중앙 통계현안

2023년 8월 고용동향

2023년 8월 고용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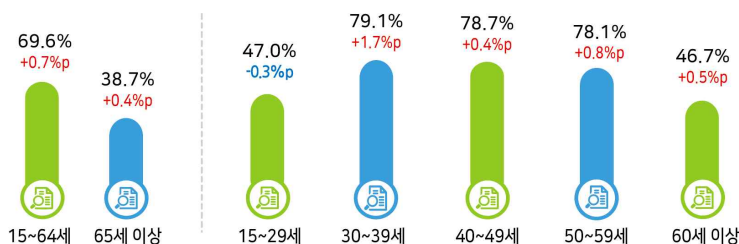


경제활동인구 구조

()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



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



산업별 취업자 현황

()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

※ 자료 : 통계청 자료(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)